

수원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1나8508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한시환

변 론 종 결 2023. 5. 11.

판 결 선 고 2023. 6. 22.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21. 6. 24. 선고 2020가소934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90,0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강제1, 3, 8, 10, 12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8. 1. 30. C은행 은행장이던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E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8. 10. 2.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F로 항소하였으나(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009. 4. 22.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9. 5. 14.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나. D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9카합10호로 이 사건 관련 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9. 9. 9. ‘원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590,066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C은행 직원만족부 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는 2010. 5. 25.경 D으로부터 위 나.항 기재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1,590,066원(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이라 한다)의 수령 권한을 위임받아 2010. 6. 2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청구(주위적 청구)

원고는, D의 소송대리권 수여 없이 법무법인 G이 소송대리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관련 소송 판결은 무효이므로 그에 기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라 피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소송비용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D의 소송위임장을 위조하고 C은행의 공금을 횡령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대납한데다 이 사건 소송비용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를 협박하기도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을 청구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에 착수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D로부터 이 사건 소송비용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다음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D의 소송위임장을 위조하고 C은행의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과 갑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소송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2)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H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11. 10. 법무법인 G의 소송대리 행위는 D의 추인에 의하여 유효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3)).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이은희, 판사 이국현, 판사 김용태

1) 원고는 2022. 11. 21.자 예비적 청구취지 추가신청서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송비용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피고의 주장이 사실과 부합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정대리권 ·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 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D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도 원고가 제출한 2023. 6. 13.자 변론재개신청서에 첨부된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 C은행의 임직원법률구조에 관한 규정에 기하여 C은행이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